

2014. 2. 7(금) 제 2 회의

제 1 분과

안전한 도시조성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 호신술의 개념 재정립



대구과학대학교
정귀영

호신술의 필요성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남치 살해 정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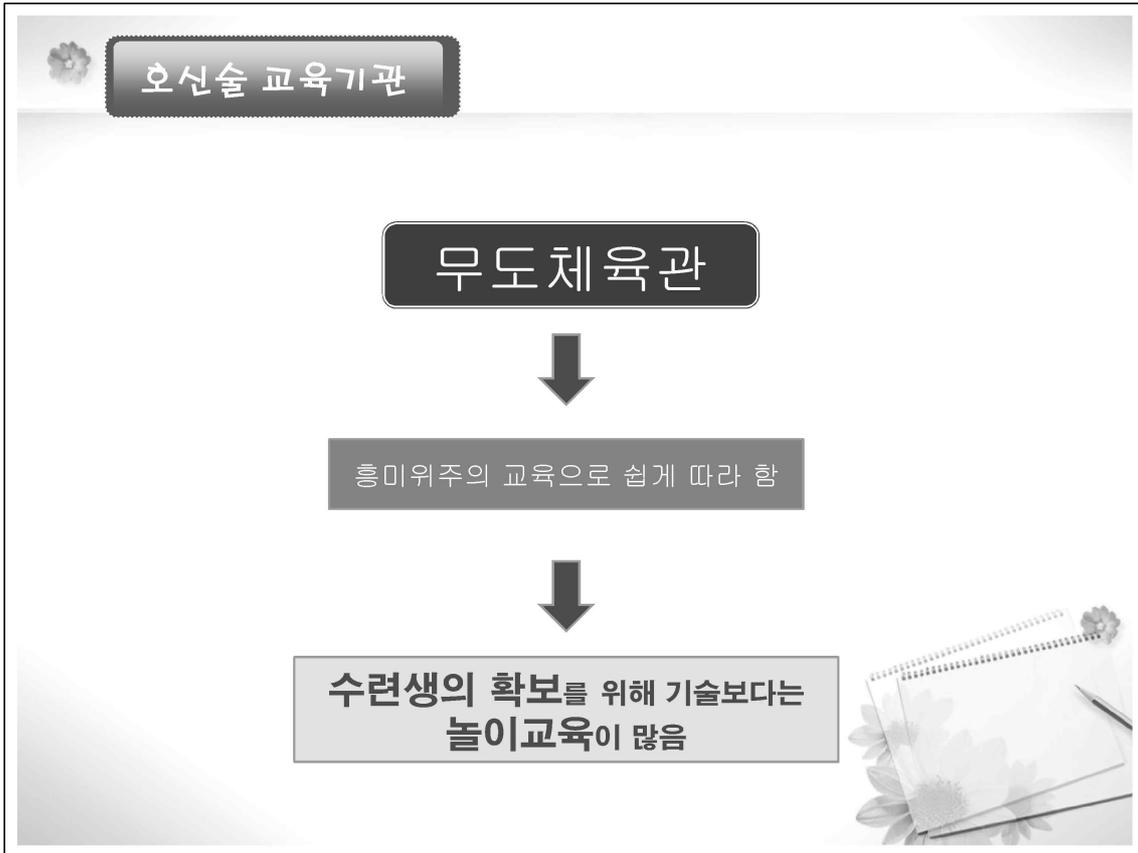
2008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2010년 아동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 / 김수철

2012년 통영 한아름양
남치 살해 김점덕

범죄대상
힘이 약하고
다루기 쉬운
여성 및 아동





기타 호신술 교육

교육기관	민간경비업체	국가 경찰공무원	어린이 안전재단
장 점	전문 경호원의 신뢰감 있는 교육	국가공무원이라는 높은 신뢰감	상황 별 대처방안 교육
단 점	도피 후 행동에 관한 교육이 없음	아동의 기술보다 어른의 기술	위험상황으로부터 벗어 난 후 행동에 대한 교육이 없음



아동호신술의 개념 재정립

아동이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공격의지를 제압 또는 현장을
벗어나는 기법

아동안전을 위한 호신기법 교육방안





감사합니다!
행복한
2월 7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설탐정 역할이 배심재판에 미치는 영향

강 동 범 (동국대학교)

< 목 차 >

I. 서 론	IV. 배심재판에 있어 사설탐정의 증거효력
II. 사설탐정의 역할	V. 결 론
III. 배심재판에서 강조되는 절차적 특징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지도 6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이루어진 참여 재판에 있어 배심원들의 역할을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간의 증거확보 및 증인신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배심제도에 있어 아직 입법화 단계이지만 사설탐정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이 생긴다면 사회흐름으로 보아 긍정적인 견해가 앞서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전문성 여부에 있어 중간역할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성을 잘 고려해 다른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도입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앞으로의 급변하는 사회에 개인의 사생활 강화 및 정보의 중요성 등을 파악한다면, 탐정업종의 직업 발전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배심제도의 정착화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에서 증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배심제도의 기능 및 역할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실정에 맞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부족함이 있지 않은지 선진국의 제도를 고찰해 보려한다. 우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사설탐정업무의 영역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여러 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합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가 가져다준 증인의 중요성을 상기해 보며, 사설탐정의 역할이 배심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사설탐정의 역할

1. 외국의 사례

탐정제도가 오래 전부터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과 체계적인 탐정제도를 갖추고 있는 호주, 그밖에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 탐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조사가 필요한 거의 모든 사건에 탐정이 관여할 정도로 탐정이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탐정제도는 50여개 주에서 자체적인 법률시스템과 제도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주 정부의 법과 규칙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성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범위는 각 주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Pennsylvania, New Jersey, California, Florida State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들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Pennsylvania State에서는 탐정을 비용, 보수 기타의보상을 받고 법에 규정된 업무내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인력공급을 받아들이거나 하청계약을 하거나 조사에 동의 혹은 조사를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탐정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

- ① 미국연방이나 주 혹은 미국에 속한 영토에 대해 발생되거나 위협이 되는 범죄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 ② 특정 개인이나 단체, 협회, 조직, 사회분야, 동료, 법인 등의 확인, 습관, 관계, 거래, 평판, 특성 등에 대한 조사
- ③ 증인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조사
- ④ 실종자의 소재파악
- ⑤ 분실 및 도난재산의 회복 및 소재파악
- ⑥ 특정인, 특정조직, 사회, 협회, 법인, 직원 등과 관련된 사실 확인
- ⑦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한 책임의 원인과 근거 등의 파악
- ⑧ 파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사람이나 그 당시 고용주에 대한 사실조사
- ⑨ 종업원, 관리인, 계약자, 하도급들의 행위, 정직, 효율, 충성 또는 활동에 대한 사실조사
- ⑩ 형사재판, 민사재판 시 조사위원회, 판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판정 및 조정 전에 사용될 증거의 확보

1) The Pennsylvania Private Detective Act of 1953, §12.

2) 호주

호주는 매우 체계적인 탐정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6개의 주(State)와 2개의 특별 지역(Territory)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에 따라 탐정에 대한 인가규정뿐만 아니라 운영 형태도 조금씩 다르지만 1995년부터 연방정부의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Advisory Board에서 만들어진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AQF)가 국가적으로 필수적 교육과 훈련의 모든 자격에 대한 일관된 틀을 제공하고 있다.²⁾ 호주의 탐정제도는 탐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인정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아 탐정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호주에서의 탐정의 활동범위는 탐정면허를 취득한 주에 제한되지만 자신이 활동을 원하는 주에 세금을 내고 업무활동에 대한 허가를 얻으면 다른 주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³⁾

〈표-1〉 호주 탐정의 업무범위

주명	업무범위
Western Australia	① 채권의 회수, 영장송달, 상품회수 ②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3자를 찾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 사업이나 개인적 문제의 조사
Northern Territory	① 대금이 입금이 안 된 상품이나 동상의 회수 또는 그 소재의 확인 ② 채권의 회수 또는 독촉 ③ 판결의 집행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법적절차를 집행하는 업무 ④ 소송을 목적으로 한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 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실종자를 찾는 업무 ⑥ 다른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 또는 사업이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Queensland	① 보수를 대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
Victoria	① 다른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 또는 사업이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② 실종자의 소재확인
South Australia	① 상품의 회수 또는 소재확인 ② 채권의 회수 또는 독촉 ③ 지방세회수를 목적으로 동산을 압류하는 업무 ④ 판결의 집행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법적 절차를 집행 ⑤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 또는 개인의 사업이나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⑥ 실종자의 소재확인 ⑦ 소송을 목적으로 한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
Tasmania	① 선취특권을 조건으로 동산을 회수하거나 소재를 확인하는 업무 ② 채권의 회수 또는 독촉 ③ 법원의 판결, 명령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 ④ 압류활동 ⑤ 다른 사람의 성격, 행동을 조사하거나 사업,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⑥ 실종자의 소재확인 ⑦ 소송을 목적으로 한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

2) 이상원, “호주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2004, pp 375~379.

3) 송봉규,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47~50.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2003년 3월 18일 개정된 「국내치안에 관한 법률(Loi No.2003-239 de 18 mars pour la se ´ curite inte ´ rieuse)」에 의해 1983년 「안전확보를 위한 사적 업무에 관한 법률(Lio No.83-629 de 12 juillet 1983, Lio re ´ glementant les activite ´ s prive ´ es de se ´ curite ´ , 이하 “개정1983년 법”)」을 개정하여 경비업과 함께 탐정업을 규정하고 있다. 탐정업에 관한 개정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에 의해 Security에 대한 세계적 의식이 높아지고 다른 EU국가에서의 탐정업 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1983년 개정법’에서는 종래 신고제도 대신 탐정업의 허가제도, 탐정의 인가제도, 자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83년 개정법’제 20조에서는 탐정의 업무를 신분 또는 목적이 확실치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당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적 조사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탐정 업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개인적 조사의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조사를 위한 비용적 부담이 큰데다가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혼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탐정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탐정이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조사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 ① 사내범죄(정보유출, 사내절도 등)에 관한 조사
- ② 신용조사(개인의 지불능력조사)
- ③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하여 중요보직 후보자나 채용후보자에 대한 신변조사
- ④ 채무자의 소재파악
- ⑤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

4) 독일

독일에서는 탐정업에 대한 면허제도 등의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탐정업은 직업훈련체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영업규칙(Gewerbeordnung) 제38조에서 감독되어야 할 업종의 하나로 탐정업이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탐정의 업무는 1970년대까지 배우자의 부정과 관련된 조사가 주된 업무였으나 1977년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에서 제외되는 개정법이 통과된 이후 불륜과 관련된 조사는 감소하였다. 2004년 연방독일탐정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Detektive : BBD)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활동분야는 경제범죄관련이 많다고 하며 업무범위확대에 노력한 결과, 현재 업무의 대부분은 상업계, 산업계, 상사 등으로부터의 의뢰이고, 불법취업이나 모조제품의 적발 등의 조사 의뢰도 있다고 한다.⁵⁾

4) 나영민,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28~32.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97~101.

5) 나영민, 전개논문, pp33~34.

5) 영국

영국에서는 그 동안 탐정이 되기 위한 특별한 규제나 규정이 없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탐정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사업무나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직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탐정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인들은 탐정의 기법이나 지식들을 교육하는 탐정학교들을 통해 교육을 받은 후 국가의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국가작업인증(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⁶⁾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영국의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는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이 제정되면서 영국의 경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독립적 기관인 경비업 면허국(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의 설립과 함께 탐정업에 대해서도 면허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 NVQ Level 3 이상을 취득해야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 탐정은 사람과 사람의 활동, 소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감시, 질문, 또는 조사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 되며 그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특정 인물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수집
- ② 멸실 된 재산상황 또는 그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감시, 조회 또는 조사

영국에서 탐정의 주된 고객은 보험회사와 변호사로 보험사의 경우 보험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조사와 보험사기와 관련된 조사를, 변호사는 민·형사상 재판에 필요한 증거와 정보의 수집과 목격자 및 증인을 확보하는 일들을 탐정에게 의뢰하고 있다.

6)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탐정업에 대하여 특별한 국가적 규제 및 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탐정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탐정업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일본에서도 탐정업의 규제를 위한 입법화를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2006년 6월 8일에는 탐정업법인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⁷⁾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공인탐정제도의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다.⁸⁾ 다음은 일본의 “탐정업법”을 바

6) 국가작업인증(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이란 특정직업별로 대상자가 어느 수준 이상의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여러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주관한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된다. NVQ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Level 1 : 매일 되풀이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Level 2 : 개인이 혼자, 혹은 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Level 3 :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Level 4 :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요구되는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며 수단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Level 5 : 다양한 업무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점검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7)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탕으로 업무범위 및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1) 업무의 범위

탐정은 의뢰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수에 기초해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개인의 비밀을 은밀히 조사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밝혀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2) 업무의 한계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및 구속은 불가능하다. 도청 및 도찰의 경우 또한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민사배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무기휴대 및 행사의 경우 총칼법 위반이 되어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탐정은 어떠한 국가 권한, 자격, 무기소유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즉 탐정은 정의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활동범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탐정의 형태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직업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 일제치하에서 존재했었던 ‘신용고지업’이 이후 ‘홍신업’, ‘신용조사업’, 그리고 오늘날의 ‘신용정보업’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이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탐정이 직·간접적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명칭이라고 유추되어 왔을 뿐이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심부름 센터’라는 업종이 생겨났는데 이들의 본래 업무는 용역대행으로 본래의 탐정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등록하고 각종 용역업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어느새 탐정은 심부름센터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심부름센터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서 탐정에 대한 우리사회 일반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탐정은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서 그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마저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탐정제도가 정착한 국가의 탐정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탐정의 모습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청이나 뒷조사 등의 불법적 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이른바 ‘홍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떠올리는 바 이러한 인식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건전한 직업으로서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8) 강영숙, 전계논문, 76면.

Ⅲ. 배심재판에서 강조되는 절차적 특징

1. 공판중심주의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재판에 있어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판단에 있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행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공방과 입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공개재판주의, 직접주의, 구술주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등의 인권보장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념이다. 특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그간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는 조서 재판으로 비판받아온 과거의 공판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조된다. 공판 중심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공판정 밖에서 작성된 조서가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는 공판정에서 법관(배심원)이 직접 인식하도록 하며, 공판기일은 될 수 있는대로 집중적으로 계속 열려 법관의 심증이 희미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의 다른 서류나 물건을 첨부·인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건에 관해 법관의 예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그동안 공판에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검사의 피고인 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동등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⁹⁾

2. 당사자주의

현재 형사배심제도는 당사자주의인지 혹은 직권주의인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인 당사자주의는 배심재판에서의 실질적인 국민의 의사반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에 따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하게 되고,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됨으로써 배심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주로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국가들이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구조에서는 재판장과 배심원은 수동적 청취자로 남게 된다. 재판장이나 배심원은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증거를 결론 도출과정에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

9) 송형주,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따른 한국의 수사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p20.

자들 각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형성을 일임해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에 내재한 편견이나 모순점이 재판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법정에서의 구술변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¹⁰⁾ 법률 문외한인 일반시민에서 선출되는 배심원이 단기간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법정에서 접한 증거들 중에서 올바른 정보만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거법이 발전된 것도 당사자주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당사자주의 에서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소송은 당사자의 청구(공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된다. 또한 소송의 진행도 당사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데 증거의 수집과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겨지고 심리도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의 형태로 진행된다. 당사자주의를 철저히 유지하면 소송절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소송물의 처분을 허용하게 된다.

당사자주의는 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옹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고, ②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절실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송활동 또는 입증활동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할 수 있으며, ③ 법원이 소송 중에 휩쓸리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①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하기 어렵고, ② 당사자의 이기적 소송활동이나 입증활동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으며, ③ 당사자간 소송능력상의 차이로 인하여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④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당사자간 타협을 위한 거래에 의해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지위를 부여하여 판사가 소송을 주도하여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유 무죄를 심판한다는 주의로써 대륙법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참심제의 전형적인 것이다. 따라서 직권주의에서는 법원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 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하며(직권탐지주의),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다(직권심리주의).

직권주의는 ① 법원이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효과적이고, ②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할 수 있으며, ③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임무를 담당하여 뒤떨어진 소송능력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① 사건의 심리가 법원의 자의와 독단에 흐를 위험이 있고, ② 피고인의 소송당사자로서 지위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어 인권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며, ③ 법원이 소송에 몰입되어 제3자로서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 배합한 절충적 형태이다.

10) 닐 비드마르, “역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영미법국가의 배심제도”, 닐 비드마르 엮음, 김상준 외 [세계의 배심제도], 2007, p.44

IV. 배심재판에 있어 사설탐정의 증거효력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마찰이 우려되는 증거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탐정의 주요 업무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금전을 대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무제한 적으로 허용할 경우 자칫 탐정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 활동이 제한되는 분야에 대한 금지는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된 영역을 제외한 탐정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과학, 전문분석, 감정업무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탐정은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영역에서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의 감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업무를 제시하고 있다.¹¹⁾

- ① 법화학분야 : 화재원인분석, 부정유류감정 및 검사, 폭약 및 폭발물 분석, 독극물의 검사 및 분석, 환경오염감정 및 검사
- ② 법생물학 분야 : 유전자검사 및 감정, 정액검사 및 감정, 의사체원인규명, 사체의 사인규명
- ③ 법물리학 분야 : 인영감정 및 분석, 교통사고의 역학적 분석, 총기사고의 역학적 분석, 음성감정 및 분석
- ④ 법의학 분야 : 사인규명(부검), 정액채취검사, 두개골골절검사, 복부절개검사, 변사체의 신원확인, 백골화 변사체의 신원확인, 친자확인 검사 또한 우리나라의 탐정과 관련한 사설민간단체들은 이외에도 필적감정, 인장감정 등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은 감정전문가와 탐정을 동일시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위에서 나열된 업무들은 탐정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탐정은 이러한 감정업무를 직접 실시하는 감정전문가가 아니라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전문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기고 이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맡긴 사건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수사기관의 실제상황을 살펴보아도 증거의 수집업무와 이에 대한 분석, 감정업무는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전문가와 분석·감정전문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옳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탐정을 감정업무와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입장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1) 손상철, 민간조사학개론, 서울 : 백산출판사 2005, pp.62~63

V. 결 론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현재 민사재판에 배심심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미국만이 일반적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경우 배심제도 도입은 주로 형사 배심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형사사건에 있어 배심재판을 한 때 도입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다. 일본에서 배심제도가 실패한 이유로는 첫째, 당시의 시대상황이 비민주적 이었다는 점, 둘째, 법관, 검사, 변호사 집중심리나 다른 절차에서 배심을 이용하여 심리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였다는 점, 셋째, 국민들이 배심제도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 넷째 배심제도 자체에 내재된 한계 문제 등이라고 진단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사실심에 배심을 도입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일본의 배심제도 실패의 원인 중에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에 주목하고 이해한다면 좋을 것이다.

먼저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의 활발한 변론을 배심원단 앞에서 유도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서면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배심재판에 있어 사실탐정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법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 번째 이유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배심제도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정도를 떠나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사실탐정이 변론보조자의 역할이나 증인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이행한다면 배심제도의 성장과 더불어 사실탐정의 활발함이 뒤따를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심제도의 사실탐정 역할이 한층 성숙된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본다. 소송과 관련한 증거의 수집과 발견 업무는 의뢰인의 권익과 직결되는바 불법적인 증거수집활동이나 편법을 이용한 사실의 확인 등 업무활동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탐정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업무활동 영역의 성격과 구조를 통해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숙(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7~101.
- 나영민(2005),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8~32.
- 닐 비드마르(2007), “역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영미법국가의 배심제도”, 닐 비드마르 엮음, 김상준 외 [세계의 배심제도], p.44
- 손상철(2005), 민간조사학개론, 서울 : 백산출판사 pp.62~63
- 송봉규(2007),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7~50.
- 송형주(2007),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따른 한국의 수사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 이상원(2004), “호주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pp 375~379.
- The Pennsylvania Private Detective Act of(1953), §12.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 주 상(대구예술대학교)

I. 서 론

현대 사회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영향으로 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협력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공공재를 산출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경찰 역시 민생치안을 혼자만의 힘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협력을 이룰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치안활동의 경우에는 부족한 경찰력 보충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력치안(Cooperation Policing)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경찰과 주민간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취약시간대의 집중적인 합동순찰을 통해 지역의 범죄예방효과를 낼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간 치안정보의 공유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유대가 더욱 더 강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하혜영 외, 2011: 1-2).

이와 함께 경찰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치안과 관련하여 경찰서비스의 효과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서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적 활동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조병인, 2001: 3). 그리고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체를 지역사회경찰과 자율방범대를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 조직은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차원의 봉사단체이며, 경찰협력단체와는 조금 다른 임무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최웅렬 외, 2011: 123).

자율방범대는 지역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3~5명이 조를 편성하여 주로 심야에 범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부녀자나 청소년들의 안전귀가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경찰백서, 2013: 98). 그리고 다른 자원봉사활동과는 달리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으로 위협에 노출되는 임무의 특수성과 경찰업무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방범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방법활동은 봉사조직단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범죄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더 이상 봉사단체 수준의 임무가 아닌 범죄에 직면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율방범대원들 역시 지역의 일원이고

나아가서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보호해주고 관리 및 지원해 줄 수 없는 기본적인 법률 제정도 미비한 실정에 있다. 물론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미 전국적 단위에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해 하루 빨리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여타 자원봉사단체에 비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범죄현장이라는 돌발적이고 위급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순기능과 범죄예방에 대해 잠재적이고 가시적인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법안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자율방범대활동의 돌발성·위기성·특수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를 법제화 한다면 반드시 국가의 지도·관리 규정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조직하여 정예화 시키고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범활동을 하는 치안보조 인력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호윤, 2011: 5-8).

이 연구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의 범죄예방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에 개최된 공청회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사항을 살펴보고, 범죄예방의 협력자로서의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활동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치안거버넌스와 자율방범대

197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일방적인 통치를 행정의 본질로 인식하던 전통적 관료제 방식에 반기를 들면서 나타난 정부의 역할이나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종래의 계층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의 탈피를 강조하는 것이다(하상군, 2009: 10).

이와 같은 거버넌스는 정부 및 사회 제반 세력의 참여와 공조를 통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국가가 중심이 된 메커니즘과는 다르게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통하여 공식적인 권위가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율적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제도 또는 조정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보다 참여적이고 분권 지향적인 정부의 역할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주상, 2013: 42).

지역치안거버넌스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 그리고 실무상 개념으로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치안거버넌스를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광주 외, 2012: 5). 협의의 지역치안거버넌스는 경찰이 경찰목적을 효율적으로

로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서(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를 기준으로 다양한 경찰협력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규모의 인원으로 특정한 명칭을 가지는 단체를 구성하여 협력치안에 활용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경찰 실무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다음의 표와 같은 단체가 있다(조두원, 2009: 12).

<표 1> 경찰의 협력단체 현황

기능 별	단 체	기능 별	단 체
경 무	- 경찰발전위원회 - 지역치안협의회	정 보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 집회시위참관단
생활안전	- 생활안전협의회 - 청소년지도위원회 - 자율방범대 - 아동안전지킴이 - 시민명예경찰관	경비교통	- 모범운전자회 - 녹색어머니회 - 전의경어머니회 - 교통질서확립추진위원회 - 교통자문위원회
수 사	- 인권위원회 - 누리캅스	보 안 외 사	- 보안정책자문위원회 - 보안협력위원회 - 외국인인권보호위원회 - 외사협력자문위원회

또한, 광의의 지역치안거버넌스는 앞에서 언급한 경찰협력단체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범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소방, 교육, 교정, 언론, 시민단체, 민간경비 등 관계기관이 지역사회에 불법·무질서를 추방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상수, 2009: 70). 이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유형들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자율방범대이다(임창호, 2013: 67).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읍·면·동 단위에 지역주민으로 조직한 봉사협력 단체로서,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임창호, 2013: 67). 자율방범대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4,055개 조직에 10만1,36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¹⁾ 2012년 한 해 동안 4,119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763명의 형사범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찰은 자율방범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근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방위 기본교육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치안봉사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범대원 및 형사범 합동검거 유공자 3,777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신고에 대해서는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1)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3. 8. 30. 의안번호: 6619).

2. 자율방범대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최초의 방범대원제도는 1953년 11월 공비도벌로 인한 부족한 치안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리·동 단위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자율적인 주민 야경제에서 출발하였다(오윤성, 2000: 187; 김호윤, 2011: 5; 최응렬 외, 2011: 3).

이 후 1963년 5월 19일 치안국 지시인 「방범위원회 운영요강」에 의해 주민자활의 방범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방범대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의 방범원 제도는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민들로부터 방범비를 징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1989년 3월 1일 정부의 준조세 폐지방침에 의해 법적근거가 없던 방범비 징수를 폐지하고 7,562명의 방범대원을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공식적 사회통제체제로 변형되었다(김형청, 1991: 77).

그러나 1990년 10월 13일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따라 다시금 주민 자율방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 지역별로 활동하던 조직을 파출소별로 재정비하고 인원도 확충하는 등 자연스럽게 현재의 자율방범대가 형성되었다.

3. 자율방범대와 시민참여 관련 이론

1) 지역사회경찰활동 이론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전통적인 경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권위적인 행태와 경찰과 주민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무질서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를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사고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안이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경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경찰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치안서비스를 공동생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치안공공재의 공동생산은 정부예산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즉 이웃감시, 자율방범대, 범죄사건의 신고를 활성화 등의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김명수, 2004: 20).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주민이 경찰활동 서비스 급부의 대상이면서도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지향적인 접근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궁극적인 전략이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치안서비스의 공동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이진아 외, 2009: 208).

한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POP), 지역사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Community Problem Oriented Policing: CPOP),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NOP), 시민지향적 경찰법집행(Citizen Oriented Police Enforcement: COPE), 경찰지역 대표자(Police Area Representatives: PAR), 근린도보순찰(Neighborhood Foot Patrol)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은 모든 경찰기관들의 이념이 반영된 경찰을 의미하고(Radelet et al., 1994: 60-61),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방향과 이념이 고려해야 할 영역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의 치안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유도를 시작으로 자율적인 방법활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Police Service Co-production)이란 국가의 치안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경찰과의 교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안전에 긍정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철용, 2007: 28).

이러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은 협의의 공동생산 즉, 정부의 치안서비스 전달 담당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민들이 서비스 생산 활동에의 참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광의의 공동생산은 이러한 상호작용과 무관하게 서비스 생산 활동에의 모든 주민의 참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를 넓게 보면,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 양자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들어 민간 경비분야도 공동생산 주체의 한 축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임창호, 2001: 67).

3) 사회통제이론

자율방법대활동과 관련된 또 다른 이론인 사회통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율방법활동을 통하여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간의 자율방법활동은 상호협조를 얻어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공식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적 사회통제가 아닌 비공식적 사회통제로써 전체적인 사회통제기구를 피통제자와의 마찰 없이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통하여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전영실, 2005: 44-45).

이러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경찰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를 높이지게 만들어주고, 우호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면 일탈을 자제하며,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전념하게 된다. 즉,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상호신뢰감과 유대감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원활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이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지역조직을 위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한다(이성식, 2001: 121).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상황적 범죄예방은 지역사회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키려는 방법보다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Crime Opportunity)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전략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황적 범죄예방은 매우 특정한 범죄 형태

를 대상으로 노력하며,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즉각적인 환경을 관리, 설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인지된 위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방법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가 있다(Clarke, 1980: 137-140).

Clarke의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과 범죄자가 인지하고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를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환경변화가 가능하다는 이념에 의존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매력에 대해 범죄자가 단순히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범죄자 자신이 행동으로 실행에 옮길지 여부에 대해 통제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최소한의 위험이 있는 장소, 시간, 잠재적 피해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상황적 범죄예방에서는 범죄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에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Lab, 2004: 177-178).

4. 자율방범대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문헌연구를 통해 자율방범대활동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정덕·임유석, 2011; 정세종, 2011; 황현락, 2011)과, 자율방범대활동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들(김인, 1997; 이성식, 2001; 김영오, 2003; 전영실, 2007; 이진아·황의갑, 2009; 박진희, 2011; 임창호, 2013)이다.

먼저, 김인(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율방범대활동이 잘 행해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보다 더욱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들 간의 친밀성은 경찰서비스의 안전감과 자율방범대활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식(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 내 모임 및 조직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율방범순찰도 활발하였으며, 지역유대가 높은 지역에서도 다소 방범순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이 인지하는 지역유대, 개인의 지역모임활동 참여도,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개인평가라는 개인수준의 변수의 영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오(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찰신뢰성, 자율방범활동 필요성, 자율방범활동 인지도, 경찰직무태도의 순으로 자율방범활동의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영실(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율방범활동의 개인적 효과로는 주민과의 친밀성 강화가 가장 많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적 효과로는 청소년 비행 감소, 범죄감소, 주민간 유대강화 등의 평균이 높았다.

이진아·황의갑(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율방범대원간의 유대감과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인식은 참여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 전념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박진희(2011)는 시민의 자율방범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는데, 연구결과 범죄관련 요인들 중에는 범죄예방활동 관심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지역관련 요인들 중에서는 지역 네트워크가, 경찰관련 요인들 중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정도가, 동기 관련 요인들 중에서는 사회봉사, 네트워크 형성, 반대급부가 시민의

자율방법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창호(2013)는 자율방법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법대활동의 4개 핵심요소들이 자율방법대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해본 결과,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 및 협조,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의 자율방법대 관리 3개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선행연구의 정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김인 (1997)	자율방법활동이 경찰서비스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지역주민, 자율방법대원	자율방법대활동이 잘 행해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보다 더욱 안전하게 느낌. 주민들 간의 친밀성은 경찰서비스의 안전감과 자율방법대활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침.
이성식 (2001)	지역주민 방법순찰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지역주민	지역사회 내 모임 및 조직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율방법순찰도 활발함. 지역유대가 높은 지역에서도 다소 방법순찰이 이루어짐. 개인이 인지하는 지역유대, 개인의 지역모임활동 참여도,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에 대한 개인평가라는 개인 수준의 변수의 영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남.
김영오 (2003)	지역주민이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요인 분석	일반시민, 대학생, 자율방법대원, 경찰관	경찰신뢰성, 자율방법활동 필요성, 자율방법활동 인지도, 경찰직무태도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전영실 (2007)	시민순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자율방법대원	개인적 효과의 경우 주민과의 친밀성 강화,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지역적 효과로는 청소년비행 감소, 범죄감소, 주민간 유대강화 등의 평균이 높음.
이진아 · 황의갑 (2009)	자율방법활동 전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진단	자율방법대원	자율방법대원간의 유대감과 자율방법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참여주민들의 자율방법활동 전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박진희 (2011)	시민의 자율방법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자율방법대원	범죄관련 요인의 경우 범죄예방활동 관심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줌. 지역관련 요인의 경우 지역네트워크가 영향을 줌. 경찰관련 요인의 경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정도가 영향을 줌. 동기관련 요인의 경우 사회봉사, 네트워크 형성, 반대급부가 영향을 줌.
임창호 (2013)	자율방법대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자율방법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안	자율방법대원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 및 협조,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의 자율방법대 관리가 유의미한 영향을 줌.

Ⅲ.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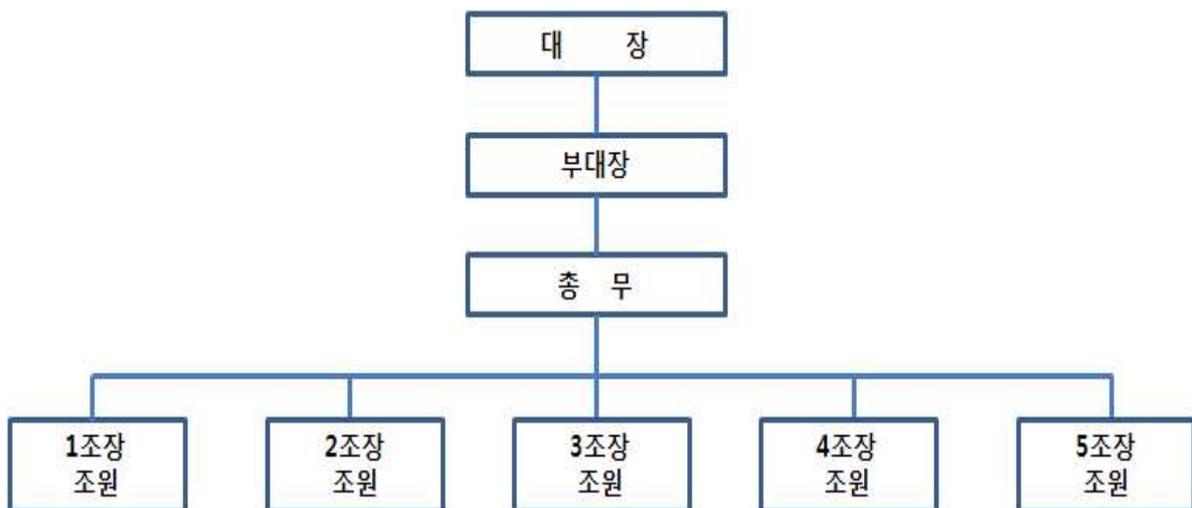
1. 자율방범대 조직현황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는 지구대의 파출소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를 두고 조직을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구대별로는 복수의 방범대도 설치할 수 있다. 조직의 단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파출소단위 조직별로 다음 <그림 1>과 같이 대장, 부대장 및 총무를 두며, 5개조로 편성되어 대원은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각 자율방범대장들로 구성된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를 두고 있다. 자율방범연합대는 각 파출소별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대장이 위원이 되며 연합대장, 총무 각 1인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정례회의 개최, 지역방범대책 및 자율방범대 운영사항 협의 등이 임무로 되어 있다.

자율방범대는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3,844개 조직에 98,595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12년 6월 30일 현재, 경기도가 517개 조직에 자율방범대원 15,25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439개 조직에 자율방범대원 10,375명이다. 충남이 402개 조직에 9,674, 경북이 351개 조직에 8,609명, 경남이 348개 조직에 8,670명, 전북이 287개 조직에 8,587명, 전남이 280개 조직에 6,540명, 강원이 238개 조직에 7,563명, 부산이 210개 조직에 4,183명, 대구가 172개 조직에 4,369명, 충북이 180개 조직에 4,958명, 대전이 144개 조직에 2,881명, 인천이 119개 조직에 2,831명, 울산이 68개 조직에 2,160명, 광주가 65개 조직에 1,200명, 제주가 24개 조직에 739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그림 1> 자율방범대 조직형태



〈표 3〉 전국 자율방범대 조직인원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직	3,844	439	210	172	119	65	144	68	517	238	180	402	287	280	351	348	24
인원	98,595	10,375	4,183	4,369	2,831	1,200	2,881	2,160	15,256	7,563	4,958	9,674	8,587	6,540	8,609	8,670	739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 2013.

2. 자율방범대의 주요임무와 성과

자율방범대의 주요임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회칙마다 다양하나 첫째, 취약지역범죄 예방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둘째,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셋째, 경찰관 합동 근무시 신고출동, 넷째, 무질서행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다섯째, 주취자 보호 및 안내, 여섯째, 관내 주요 행사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및 기타 업무보조 등을 한다(관리규칙 제5조).

또한, 최근 5년간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과의 합동검거실적 성과를 살펴보면, <표 4>에 서와 같이 자율방범대의 범죄신고 건수는 2008년 9,444건 2009년 8,851건, 2010년 3,775건, 2011년도 4,752건, 2012년도 4,119건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대의 범죄신고는 지역사회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을 도울 수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 범죄예방차원에서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전반적으로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형사범에 대한 합동검거 실적으로 보면, 2008년 3,183건, 2009년 2,106건, 2010년 400건, 2011년 657건, 2012년 76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해마다 폭력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율방범대 합동검거실적 현황

구분	형사범 합동검거실적	범죄신고
2008	3,183	9,444
2009	2,106	8,851
2010	400	3,775
2011	657	4,752
2012	763	4,119

자료 : 경찰청(2009-2013), 재구성.

경찰은 자율방범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근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방위 기본교육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치안봉사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범대원 및 형사범 합동검거 유공자 3,777

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신고에 대해서는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3. 자율방범대 운영관리

자율방범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이 없다. 현재 간접적인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로서 정부로부터 행정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참여하는 봉사자 일부에 대해 보험가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9년도 이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전국 7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구와 제주 지역에서는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초 자치 단체	종로 서대문 양천 강남 송파	기장	남구 계양	동구 서구	서구 유성 대덕	중구 동구 북구	의정부 동두천 안산 남양주 의왕 양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화천, 양구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세종,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청양 홍성, 태안	전주 익산 정읍 완주 무주 부안	목포 광양 담양 곡성 고흥 장성 신안	문경 영양 고령	통영 거제 의령
개수	5	1	2	2	3	3	6	10	10	10	6	7	3	3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 검색일: 2014. 1. 29).

한편, 최근 5년간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방범대 관련 지원 예산을 보면, 연평균 3,785개 방범대에 약 130여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등 예산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참여봉사자들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자율방범대 예산을 보면, 서울 약 22억원, 경기도 약 48억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종류에는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차량유류비, 차량도색비(지원차량 있는 경우), 기본장비비, 보험가입비, 야식비 및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

회, 2013: 39).

위의 내용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상당한 봉사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임무의 특수성과 재정적 열악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첫째, 생업에 종사하면서 365일 야간 21:00~01:00까지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둘째, 범죄예방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의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 아동성 범죄 등의 강력범죄의 빈발은 민생치안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대응 전략은 지역사회 주민과 경찰이 협력치안체제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현재 자율방범대는 경찰은 업무지원을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지원(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등)을 하고 있어 운영과 예산지원이 이원적 구조로 이뤄지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정능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의지에 따라 예산지원이 전국을 기준으로 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등 천차만별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자율방범대 운영 및 예산지원의 이원적 구조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긴급성과 돌발성 그리고 위험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치안 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여타의 다른 자원봉사 단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이므로 법적 규율이 없는 임의단체로 방치하는 것은 자율방범대활동의 유인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홍판출, 2011: 20-21).

4.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문제점

자율방범대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과 업무적으로 연계가 미흡하다.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과 업무적으로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무내용이나 많은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으나 각자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자율방범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서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해야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경찰 측과 자율방범대원 몇몇 관련자들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이 성립된다면 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기대하며 많은 자율방범대원들이 법안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경찰 측과 연계미비는 앞서 제시한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가 이러한 문제점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즉, 범죄신고 건수 대비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이 현저히 부족하며, 또한 대부분 지방경찰청 관할 자율방범대의 경우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총무가 개최 날짜만 통보해주고 경찰관 참석은 하지 않으며 이후 진행상의 문제점이나 토론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회장이나 총무가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여 해결하며 직접적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방법대의 운영이 주민들과 경찰들과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율방법대 운영에서 중심적 주체가 주민들이나 경찰이나에 따라 자율방법대의 실질적 효과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제도 운영의 형식적인 주체가 된다면 이는 단지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내지는 민경협력, 치안공동생산의 홍보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둘째, 주민참여 범위와 권한의 제한이다. 자율방법대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일반 개인(시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있으며, 주민의 직접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시민들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율방법대의 운영이 지역사회 경찰활동, 민경협력의 활동, 치안공동생산으로 질적인 변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주민의 전문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자율방법대의 운영 과정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주민과 경찰이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 주도하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민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활동에 나아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방법대 운영의 핵심주체인 주민들이 행사하는 권한 측면에서 주민참여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율방법대의 운영상 치안대상의 범위, 순찰구역의 선택, 지역치안의 정책은 주로 지방경찰청의 치안정책 수립 방향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이 해당 지역경찰의 치안정책의 목표라면 자율방법대의 운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이를 위한 순찰구역 또한 관 주도 하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따라가는 형태이다.

이는 결국 자율방법대의 운영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주민의 자율적·직접적·적극적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주민참여의 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자율방법대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적상 한계이다. 자율방법대는 치안활동시 권한상 한계, 재정여건 등 제도적 운영과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율방법대의 운영상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자율방법대가 순수한 자원 봉사라는 점에서 대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자율방법대를 포함한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치안 협력단체는 2003년도만 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없었는데 현재는 지원금을 받는 협력단체도 있다.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자체적으로나 경찰의 지원측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협력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사항을 홍보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는 협력단체는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에 비해 미흡하지만 일정 부분 관할 경찰서와 협력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운영경비가 경찰조직에서 나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나온다는 것이 다소 민경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운영경비의 지원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경찰과 협력을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게 되어 민경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IV.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

1. 경찰의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의 확대

자율방범대 운영의 지원강화 방안의 첫 번째는 경찰조직의 역할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동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하는 자율방범대의 본질적인 업무가 치안업무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자율방범대원의 교육이다.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법수행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순찰요령, 신고요령,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방법, 방범장비 사용방법, 지역의 범죄발생정보 및 비행청소년의 이해, 호신술 등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로 매일 수행하는 방범업무에서 협력해야 할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미 되어 있는 체계는 활성화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치안정보를 주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민경협력의 치안서비스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조직에서 담당해야 할 예산과 장비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누가 교육할 것이며, 교육담당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교육을 실시할 때 장비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와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민경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호 존중의 가치관이 먼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예산지원의 2원적 구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 단체의 이원적 구조를 해결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육성하여 나아가야 한다.

2. 자율방범대원의 신원확인 강화

각 지방경찰청의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에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제한으로서 규정된 ① 경찰 대상 업소 경영(종사)자 (배우자 포함), ② 파렴치 전과자 및 사생활이 문란한 자, ③ 기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자율방범대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참여가 불성실하고, 자율방범대원 선임 이후에 위의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철저히 확인하여 해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그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활동에 관한 경찰 및 시·군·구청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율방범대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정치인과의 유착으로 정치조직화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3. 경찰의 자율방범대 관리 강화

범죄예방활동은 사회의 다양한 환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은 경찰만의 혼자 힘에 의해서 달성될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므로,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들 중에서 대표적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역경찰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역경찰의 지도하에 리더의 선발과 교육, 운영의 관리·감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성식, 2001: 133). 특히, 경찰에서는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을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정확히 교육함으로써 순찰과정에서 불필요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오운성, 2000: 198). 경찰이 자율방범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율방범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 법률이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율방범대원의 봉사정신 확립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자율방범순찰활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웃감시나 지역거리 정비 등 무질서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지역의 문제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지도, 지원에의 참여 등 그 활동의 영역은 확산될 것이며,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범죄기회 이외에 지역의 사회적 환경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이성식, 2001: 136). 또한, 장애인 편의제공 서비스, 안전귀가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이러한 봉사를 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 연락하여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자율방범대원의 봉사정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 협력 및 환류체계 구축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경찰과 함께 치안활동 과정에 참여 하는 것이므로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 참여적 발전과 상호협력의 기제로 새롭게 등장한 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는 지역치안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경찰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한 형태이며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방범대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상시적인체계가 필요하다. 수렴된 주민의견 접수현황, 처리과정, 처리 결과,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요청된다.

V. 결 론

현대 사회는 ‘치안수요의 폭발시대’로 불릴 만큼 각종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경찰조직은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를 진압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활동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주민과의 협력, 즉 경찰과 주민의 동반자적 역할이 강조되는 새로운 치안철학으로 대두된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며 이는 오늘날 세계적인 경찰활동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서 한국에서는 자율방범대, 시민단체, 경찰협력위원회, 시민경찰학교, 주민 파출소 현장체험, 방법세미나 및 방법공청회, 방법리콜제, 각종 대민 봉사활동 등이 있다. 특히 자율방범대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민·경협력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으로서 시민참여가 강조되는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 이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운영지원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방범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찰조직의 적극적인 민경협력 의지일 것이다. 즉 민경협력조직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자율방범대 운영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인적, 조직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화된 경찰조직내 필요한 조직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참여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확대방안으로서 자율방범대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참여주체인 주민의 전문성 제고와 주민의 역량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운영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봉사기본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를 전국적인 단체로 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자율방범대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그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상시적인체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3), 「경찰백서」.
- 김명수. (2004),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철용. (2007),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 경찰의 협조와 자율방범활동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호윤. (2011), “자율방범대 관련 법안 공청회 발표자료,” 자율방범대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행정안전위원회.
- 이성식. (2001), “지역주민 방범순찰활동의 참여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경험연구,” 「형사정책연구」 12(3): 111-137.
- 이진아·황의갑. (2009),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 전념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연구」 12(2): 205-228.
- 임준태. (2009), 「범죄예방론」, 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임창호. (2001), “자율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전영실. (2005),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대활동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05-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 (2001),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1-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응렬·김우준·안영규. (2011), “경찰협력단체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0(1): 115-144.
- 하혜영·권아영. (2011), “교통안전·방범활동에서 주민과 경찰간 협력강화 방안,” 「현안보고서」 제116호, 국회입법조사처.
- 행정안전위원회. (2010),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검토보고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2011), “자율방범대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행정안전부 공청회 의견서, 41-42면.
- 홍관출. (20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자율방범대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행정안전위원회.
- Clarke. R. V. (1980),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and Practi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 136-147.
- Lab, S. P. (2004), *Crime Prevention-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 Anderson Publishing.
- Radelet, L. A. & Carter, D. L. (1994),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
- 경찰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www.likms.assembly.go.kr/bill>. 2014.01.23. 검색)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2014.01.29. 검색)

